소 장

〈유현〉

원 고 황 하 섭외 138

피 고 한보건설주식회사외1

손 해 배 상 (기) 청 구 의 소

소송물가액 : 금 72,124,000 원정

첨용인지액 : 금 360,600 원정

송 달 료 : 금 63,000 원정

수원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별지기재와 같음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담당 변호사 윤 영 근, 김 칠 준, 김 동 균, 노 정 희

피 고 1. 한보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일 기

2. 주식회사 남선창호
서울 중랑구 묵동 39의 5
대표이사 이 선 학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34의 34

손 해 배 상 (기) 청 구 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별지목록 기재 각 원고들은 소외 유원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합니다.)가 수원시 권선구 권선지구내에서 분양중인 유원아파트에 대하여 1994. 9.경 분양계약을 체결한후 1996. 2.말경부터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입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남선창호(이하, '피고 남선창호'라고만 합니다.)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소외 회사의 모델 하우스내에서 자신이 위 유원아파트의 발코니 샤시설치에 관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지정받은 지정업체라며 위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원고들로부터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자들입니다.

다. 또한 피고 한보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보건설'이라고만 합니다.)는 소외회사가 1995.경 부도난 이후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유원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채무를 인수한 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소외회사는 1994. 9.중순경 수원 권선지구내에 위치한 유원아파트 모델하우스내에서 25평형 아파트 8개동 총 600 세대에 대하여 2일간에 걸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 138명도 당시 위 소외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우선 당시 위 모델하우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모델하우스는 1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은 홀이 있었고, 그 좌측에는 조그만 사무실이 있었으며, 홀 안쪽에는 분양하게 될 아파트의 모델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외회사측에서 20여명의 직원들이 나와 위 홀의 정 중앙 안쪽에

여러개의 책상을 놓고 입주예정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입주예정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줄지어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남선창호측에서 나온 10여명의 직원들은 소외회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책상 바로 앞에 여러개의 책상을 체워놓고 입주예정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샤시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다. 당시 피고 남선창호의 직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줄지어 서 있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위 회사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샤시설치공사를 지정업체라고 설명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믿고 샷시설치공사를 맡기라고 선전하였습니다. 심지어 책상위에는 소외회사로부터 발코니 샷시 설치공사를 지정받은 업체라는 팻말까지 설치해 두었습니다.

당시 원고들중 일부는 이들에게 정말로 소외회사로부터 지정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 남선창호의 직원들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밖에서도 피고 남선창호의 직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발코니 샤시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으며 이 때에도 역시 자신들을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샷시 설치공사를 지정받은 업체라고 소개하면서 아파트입주전까지는 틀림없이 발코니 샷시 설치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선전하였습니다.

라. 한편 당시 모델하우스안에는 소외회사 직원들 20여명이 상주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모델하우스 밖에도 소외회사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을 뿐만 아니라, 경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고 남선창호의 직원들이 위와 같이 자신들이 소외회사의 지정업체라는 유인물을 돌리거나 팻말을 달고, 구두로 선전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무도그러한 행동을 만류하거나 입주예정자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설명해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마. 더욱이 피고 남선창호의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일부 아파트만 다른 곳에

공사를 맡기면 외관상 보기가 않좋을 뿐만 아니라, 입주한 후에 별도로 공사하게 되면 샷시값도 올라서 더 많은 돈이 들어 간다며 소외회사로부터 지정을 받은 피고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이 사건 발코니 샷시 설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바. 결국, 원고들등 187세대는 피고 남선창호의 위와같은 말을 믿고 소외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피고 남선창호와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샷시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피고 남선창호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소외회사를 신뢰한 것입니다.

사.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사건 발코니 샷시 설치공사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도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과 거의 같은 시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 남선창호가 소외회사의 지정업체라는 말을 더욱 신뢰하였습니다.

아. 그러나 피고 남선창호는 원고들로부터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샷시공사의 대금만을 받았을 뿐 아무런 공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주민들은 피고 남선창호의 대표이사는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고 위 회사는 부도처리된 사실을 알고 자신들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때, 피고 남선창호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은 물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회사도 피고 남선창호의 지정업체로서 혹은 피고 남선창호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피고 삼보건설의 책임

한편 소외회사가 1995.경 부도가 난 후 피고 한보건설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채무를 인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한보건설은 소외회사의 채무의 인수인으로 마땅히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제2 목록 제3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이 사건 판결시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구하기 위하여 본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갑제 1호증의 1 내지 138	각 아파트발코니샷시설치계약서
갑제 2호증의 1 내지 4	각 영수증(원고 1.황하섭)
갑제 2호증의 5,6	각 영수증(원고 2.김경천)
갑제 2호증의 7 내지 9	각 영수증(원고 3.이원표)
갑제 2호증의 10 내지 12	각 영수증(원고 4.배원열)
갑제 2호증의 13 내지 16	각 영수증(원고 5.곽동일)
갑제 2호증의 17,18	각 영수증(원고 6.이희동)
갑제 2호증의 19	영수증(원고 7.백연옥)
갑제 2호증의 20 내지 22	각 영수증(원고 8.고용진)
갑제 2호증의 23 내지 28	각 영수증(원고 9.장경욱)
갑제 2호증의 29 내지 31	각 영수증(원고 10.조명철)
갑제 2호증의 32 내지 34	각 영수증(원고 11.김성우)
갑제 2호증의 35 내지 38	각 영수증(원고 12.서상원)
갑제 2호증의 39 내지 42	각 영수증(원고 14.강만용)
갑제 2호증의 43 내지 47	각 영수증(원고 15.최덕규)
갑제 2호증의 48 내지 52	각 영수증(원고 16.박영화)
갑제 2호증의 53,54	각 영수증(원고 17.송수빈)
갑제 2호증의 55 내지 59	각 영수증(원고 18.이윤재)

갑제 2호증의 60 내지 63	각 영수증(원고 19. 강성식)
갑제 2호증의 64 내지 67	각 영수증(원고 20. 백현호)
갑제 2호증의 68	영수증(원고 21. 김덕흥)
갑제 2호증의 69 내지 72	각 영수증(원고 22. 성기석)
갑제 2호증의 73 내지 76	각 영수증(원고 23. 이종원)
갑제 2호증의 77 내지 80	각 영수증(원고 24. 염동혁)
갑제 2호증의 81 내지 83	각 영수증(원고 25. 박석환)
갑제 2호증의 84 내지 87	각 영수증(원고 26. 오봉영)
갑제 2호증의 88, 89	각 영수증(원고 27. 이희태)
갑제 2호증의 90 내지 93	각 영수증(원고 28. 채상병)
갑제 2호증의 94, 95	각 영수증(원고 29. 이재현)
갑제 2호증의 96 내지 98	각 영수증(원고 30. 이병걸)
갑제 2호증의 99 내지 102	각 영수증(원고 31. 유해영)
갑제 2호증의 103 내지 106	각 영수증(원고 32. 김태현)
갑제 2호증의 107 내지 109	각 영수증(원고 33. 김광희)
갑제 2호증의 110	영수증(원고 34. 최흥재)
갑제 2호증의 111 내지 113	각 영수증(원고 35. 조성용)
갑제 2호증의 114, 115	각 영수증(원고 36. 이기헌)
갑제 2호증의 116 내지 120	각 영수증(원고 37. 권성진)
갑제 2호증의 121 내지 124	각 영수증(원고 38. 차재선)
갑제 2호증의 125	각 영수증(원고 39. 이훈성)
갑제 2호증의 126 내지 129	각 영수증(원고 40. 강민옥)
갑제 2호증의 130, 131	각 영수증(원고 41. 한재구)
갑제 2호증의 132 내지 135	각 영수증(원고 42. 반영균)
갑제 2호증의 136, 137	각 영수증(원고 43. 김점곤)
갑제 2호증의 138	영수증(원고 44. 김동명)
갑제 2호증의 139 내지 141	각 영수증(원고 45. 조정현)
갑제 2호증의 142 내지 145	각 영수증(원고 46. 조항덕)
갑제 2호증의 146 내지 151	각 영수증(원고 47. 신명수)
갑제 2호증의 152 내지 154	각 영수증(원고 48. 박희수)
갑제 2호증의 155 내지 157	각 영수증(원고 49. 박영순)
갑제 2호증의 158 내지 161	각 영수증(원고 50. 이용재)

갑제 2호증의 162 내지 164	각 영수증(원고 51. 천세희)
갑제 2호증의 165 내지 168	각 영수증(원고 52. 오정근)
갑제 2호증의 169 내지 172	각 영수증(원고 53. 이정의)
갑제 2호증의 173 내지 176	각 영수증(원고 54. 장순재)
갑제 2호증의 177 내지 181	각 영수증(원고 55. 윤현중)
갑제 2호증의 182 내지 184	각 영수증(원고 57. 김영갑)
갑제 2호증의 185 내지 188	각 영수증(원고 59. 장일천)
갑제 2호증의 189,190	각 영수증(원고 60. 김종현)
갑제 2호증의 191 내지 194	각 영수증(원고 63. 김진협)
갑제 2호증의 195 내지 198	각 영수증(원고 64. 한동겸)
갑제 2호증의 199 내지 202	각 영수증(원고 65. 송준의)
갑제 2호증의 203 내지 207	각 영수증(원고 66. 서병기)
갑제 2호증의 208 내지 211	각 영수증(원고 67. 박상용)
갑제 2호증의 212 내지 215	각 영수증(원고 68. 이은창)
갑제 2호증의 216 내지 219	각 영수증(원고 69. 오세찬)
갑제 2호증의 220,221	각 영수증(원고 70. 한상권)
갑제 2호증의 222 내지 224	각 영수증(원고 71. 홍영유)
갑제 2호증의 225 내지 227	각 영수증(원고 72. 박찬홍)
갑제 2호증의 228 내지 230	각 영수증(원고 73. 김평안)
갑제 2호증의 231 내지 235	각 영수증(원고 74. 이연미)
갑제 2호증의 236 내지 239	각 영수증(원고 75. 강홍균)
갑제 2호증의 240 내지 242	각 영수증(원고 76. 신동은)
갑제 2호증의 243 내지 245	각 영수증(원고 77. 이기돈)
갑제 2호증의 246 내지 248	각 영수증(원고 78. 이상율)
갑제 2호증의 249 내지 252	각 영수증(원고 79. 공성택)
갑제 2호증의 253 내지 256	각 영수증(원고 80. 정규철)
갑제 2호증의 257 내지 261	각 영수증(원고 81. 박흥석)
갑제 2호증의 262 내지 265	각 영수증(원고 82. 장동성)
갑제 2호증의 266 내지 269	각 영수증(원고 83. 박종갑)
갑제 2호증의 270 내지 273	각 영수증(원고 84. 김형준)
갑제 2호증의 274 내지 277	각 영수증(원고 85. 김명호)
갑제 2호증의 278 내지 281	각 영수증(원고 86. 하금숙)

갑제 2호증의 282 내지 285	각 영수증(원고 87. 오치성)
갑제 2호증의 286 내지 288	각 영수증(원고 88. 이상림)
갑제 2호증의 289 내지 291	각 영수증(원고 89. 이병인)
갑제 2호증의 292 내지 296	각 영수증(원고 90. 김동진)
갑제 2호증의 297, 298	각 영수증(원고 91. 박민식)
갑제 2호증의 299 내지 304	각 영수증(원고 92. 이부영)
갑제 2호증의 305 내지 308	각 영수증(원고 93. 황병렬)
갑제 2호증의 309 내지 313	각 영수증(원고 94. 이우선)
갑제 2호증의 314 내지 317	각 영수증(원고 95. 김종순)
갑제 2호증의 318, 319	각 영수증(원고 96. 윤순건)
갑제 2호증의 320 내지 322	각 영수증(원고 97. 조묘상)
갑제 2호증의 323 내지 325	각 영수증(원고 98. 김영길)
갑제 2호증의 326	영수증(원고 99. 윤영범)
갑제 2호증의 327 내지 331	각 영수증(원고 100. 정구선)
갑제 2호증의 332 내지 335	각 영수증(원고 101. 이원준)
갑제 2호증의 336, 337	각 영수증(원고 102. 최술이)
갑제 2호증의 338내지 340	각 영수증(원고 103. 김기덕)
갑제 2호증의 341 내지 343	각 영수증(원고 105. 이장우)
갑제 2호증의 344, 345	각 영수증(원고 104. 이현승)
갑제 2호증의 346 내지 348	각 영수증(원고 106. 이춘재)
갑제 2호증의 349	영수증(원고 107. 강희관)
갑제 2호증의 350 내지 352	각 영수증(원고 108. 송종호)
갑제 2호증의 353	영수증(원고 109. 이상영)
갑제 2호증의 354	영수증(원고 110. 김용곤)
갑제 2호증의 355 내지 358	각 영수증(원고 111. 이진규)
갑제 2호증의 359 내지 362	각 영수증(원고 112. 조래준)
갑제 2호증의 365 내지 366	각 영수증(원고 113. 최광석)
갑제 2호증의 367 내지 370	각 영수증(원고 115. 이도희)
갑제 2호증의 371 내지 374	각 영수증(원고 116. 권명숙)
갑제 2호증의 375 내지 378	각 영수증(원고 117. 임정규)
갑제 2호증의 379 내지 382	각 영수증(원고 118. 송창근)
갑제 2호증의 383 내지 386	각 영수증(원고 119. 이용배)

갑제 2호증의 387 내지 391	각 영수증(원고 120. 성경희)
갑제 2호증의 392 내지 395	각 영수증(원고 121. 전상길)
갑제 2호증의 396	영수증(원고 123. 남윤희)
갑제 2호증의 397 내지 399	각 영수증(원고 124. 정기용)
갑제 2호증의 400 내지 404	각 영수증(원고 125. 서창원)
갑제 2호증의 405 내지 407	각 영수증(원고 126. 변동혁)
갑제 2호증의 408	영수증(원고 127. 이종기)
갑제 2호증의 409 내지 413	각 영수증(원고 128. 조일순)
갑제 2호증의 414, 415	각 영수증(원고 129. 이종석)
갑제 2호증의 416 내지 419	각 영수증(원고 130. 곽상화)
갑제 2호증의 420 내지 422	각 영수증(원고 131. 김학재)
갑제 2호증의 423 내지 426	각 영수증(원고 132. 허창석)
갑제 2호증의 427 내지 430	각 영수증(원고 133. 유부식)
갑제 2호증의 431 내지 433	각 영수증(원고 134. 한상철)
갑제 2호증의 434 내지 437	각 영수증(원고 135. 양주석)
갑제 2호증의 438	영수증(원고 136. 김평파)
갑제 2호증의 439 내지 443	각 영수증(원고 137. 송일규)
갑제 2호증의 444 내지 448	각 영수증(원고 138. 이계숭)
갑제 2호증의 449 내지 451	각 영수증(원고 139. 이주용)

기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1. 위임장	1통
1. 담당변호사 지정서	1통
1. 납부서	1통

1996. 12.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 산

담당 변호사 윤 영 근

담당 변호사 김 칠 준

담당 변호사 김 동 균

담당 변호사 노 정 희

수원지방법원 귀중